

1%대 대형마트 영업익 압도... 다이소 '10% 매직'

10여 년간 1조 원대 물류 투자 약발... 외형·수익성 쌍끌이 지난해 매출 4조 원대 증반·두 자릿수 영업이익 성과 기록 내년 세종 내후년 양주 허브센터 준공... 경쟁력 강화 박차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박리다매' 이미지를 넘어 고수의 구조를 갖춘 유통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고물가 기조 속에서 가성비 소비가 확산된 데다, 10여 년간 이어온 대규모 물류 투자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외형과 수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는 지난해 매출 4조 원대 증반,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매출 3조4605억 원, 영업이익률 7.6%에서 2024년 매출 3조9689억 원, 영업이익률 9.4%로 상승한 데 이어, 수익성이 두 자릿수에 진입한 셈이다. 이는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업체들의 1%대 영업이

익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1000~5000 원대 상품을 판매하는 균일가 구조에서도 충분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수익성 개선의 핵심은 물류 혁신이다. 다이소는 2012년 1500억 원을 투입해 용인 남사물류허브센터를 구축했고, 2015년에는 2500억 원을 들여 부산 물류 거점을 세웠다. 이후 2023년 안성 물류센터를 확보하며 전국 단위 물류망을 완성했다.

자동화 설비 확대와 직매입 구조를 통한 유통 단계 축소로 원가를 낮췄고, 판매재고 배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요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해 재고 비용을 줄였다. 업계에서는 "1000원짜리 상품에서 약



100원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남길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이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 투자에 나섰다. 4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2027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세종허브센터를 건립 중이며, 1600억 원 규모의 양주허브센터도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양주센터는

2030년까지 전체 온·오프라인 물동량의 약 37%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물류 생산능력(CAPA) 확대에 따라 현재 약 1600개인 점포 수도 단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상품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가성비 뷰티'는 새로운 효자 카테고리로 부

상했다. 기초화장품, 색조, 네일·미용 소품 등 자체 브랜드(PB)와 협업 상품이 잇따라 흥행하면서 뷰티 부문 매출은 최근 수년간 매년 두 자릿수, 일부 품목은 두 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5000원 이하 가격대에 품질을 끌어올

린 전략이 10~20대 소비자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흡수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밖에 주방·수납용품, 반려동물용품, 계절 상품 등도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탄탄한 현금흐름은 부동산 투자로도 이어지고 있다. 계열사 한웰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을 355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룹 사옥이나 플래그십 스토어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단순한 저가 생활용품점이 아니라, 자체 물류와 상품 기획 역량을 기반으로 한 종합 유통 플랫폼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은 기본이고, 이를 지탱하는 물류 효율과 데이터 운영 역량이 수익성을 좌우한다"며 "다이소는 매출 확대와 마진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현대차, 새만금에 10조 투자... 신사업 중심지 육성

곧 MOU... 5년간 AI·에너지·로봇 집중 투자
핵심 신기술 접목한 수소 AI 신도시 조성 추진

현대차그룹이 수소 원을 투입해 새만금을 인공지능(AI), 수소 에너지, 로봇 등 미래 신사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등과 함께 새만금에 5년 이상 장기 10조 원을 투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각종 신사업 시설을 새만금에 조성하면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가 지원·협력한다. MOU 체결식은 정부와 지자체 핵심 관계자들과 현대차그룹 정이선 회장과 장재훈 부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AI 데이터센터와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대형 수전해 설

비, 로봇 생산 시설, 피지컬AI 애플리케이션 센터 등을 새만금에 설립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친환경 에너지를 기업지 저렴하게 조달하는 지산지소를 원칙으로 삼아 AI 데이터센터와 수소 에너지 등 각종 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현대차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총 125조2000억 원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AI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동화, 로봇틱스, 수소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번 새만금 투자는 투자 계



정이선

획이 구체화된 첫 사례다.

또한 당시 현대차는 "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AI, 수소, V2X 등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핵심 신기술을 접목한 수소 AI 신도시가 조성되도록 투자를 검토하며 각 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기에 산업 기반이 갖춰진 울산·광주 등을 제외한 서남권을 중심으로 투자처를 모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이 주목된 이유는 여의도 약 140배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와 풍부한 일조량을 갖춰 전력 생산이 수월하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

이에 따라 전력 소모가 큰 AI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유리한 점이 있어 설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재계 관계자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현대차는 AI 역량 고도화에 필수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전력 AI 데이터센터를 통해 피지컬AI 로봇 자율주행차 등에서 생성되는 AI 학습 데이터를 저장·활용할 계획이다. 이영훈 기자 yhleee@skyedaily.com

반도체 기술 유출 판결 파기환송 "영업 비밀 누설, 별개 범죄"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로 유출한 전 직원에 대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혐의가 별개 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대법원 3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김 씨와 함께 징역 2년 6개월은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유진테크 전 직원 방모 씨 등 2명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게 됐다.

김 씨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로 이직했으며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유진테크 등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2024년 기소됐다.

이들은 유진테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도면 등을 무단 방출한 뒤 중국에서 반도체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결장치(NAS) 서버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영업비밀을 알려

1·2심 무죄 판결→대법 유죄 누설·취득도 따로 처벌해야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의 DDR5, CXMT 홈페이지 캡처

주기도 했다.

1심은 김 씨 등이 영업비밀을 NAS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방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은 선고 받았다.

다만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이미 영업비밀 사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와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 3자에게 누설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씨 등이 NAS 영업비밀을 올린 행위가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하는 상상적 결합에 해당하는 만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무죄 부문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입법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관련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원심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사람 중심 휴먼르네상스
심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진심 담은 이야기로 마음을 브랜드하다

SkyDaily
변화의 본질을 담아, 내일의 브랜드 이끌다
심성브랜드연구소